

# 함께 만들어 가는 장애인의 차별 없는 우리 동네

2025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차별 없는 우리동네(경기도민 편)



Gyeonggi-do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인권이란

인권이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렇듯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장애·비장애를 떠나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는 **다름**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의심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무관심**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을 하시거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1. 장애와 장애인이란?	2
2. 장애인에 대한 오해	4
3. 장애와 관련한 올바른 표현	8
4.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유형	10
5. 장애인학대란?	12
6. 일상 속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14
7.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22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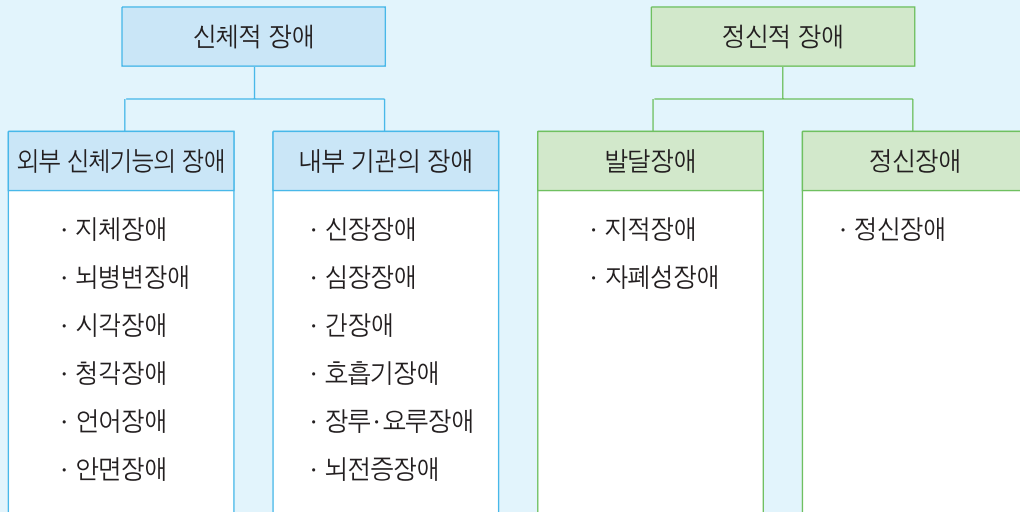
# 장애와 장애인이란?

## 이해 1 장애와 장애인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해 2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2026년 5월부터 ‘체장장애’가 공식적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 장애는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개념



눈이 나쁘다고 시각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경을 사용하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개인의 물리적·정신적 손상과 사회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외국의 경우, 장애를 어떤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임산부, 고도비만, 외국인 이주자 등을 한시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와 제도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기회와 선택 그리고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장애인 등록이 안된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 되나요?

장애인 등록(제도)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일 뿐,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속의 제약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모두 보장 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원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오해

### 오해 1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무조건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오해 2 장애인은 인지와 판단이 어렵다?

장애인은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장애 유형에 따라  
인지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뇌병변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대하면서  
그가 무조건 인지장애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습니다.

외견상 보이는 행동이나 언어표현에서의 어려움을 보고  
인지에도 장애가 있다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입견 없이 반드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오해 3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시각장애인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빛과 명암, 형태 등을 인식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글자를 크게 작성하여 주거나 또는 계단의 층 끝단에 색상을 다르게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점자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 주요 문자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와 프로그램 등이 점점 발달하면서

리더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50%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더프로그램 : 화면읽기 프로그램



## 오해 4 모든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사용한다?

처음 청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면 '수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하지...?' 라고

당황하게 되는데, 실제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입모양을 보고 소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수어, 구화, 필담 등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면 됩니다.



## 오해 5 지적장애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지적장애인은 인지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간혹 지적장애인을 나이에 맞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태도, 호칭 그리고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원을 통해 지적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린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에 맞는 사회적 예우를 갖추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 오해 6 자폐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다?

자폐성 장애인 중에는  
 특별한 한 가지 분야에 남과 다른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개인별로 다른 행동방식과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차이 또한 매우 크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개인별 행동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칭찬도 차별입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7

# 범죄자 중에는 정신장애인이 많다?

언론에서 반사회적 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서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다준 것 입니다.

이번 화재사건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옆집 사람이  
정신장애인이라며...  
무서워~

무서워할꺼 없어  
정신이상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르니까~



## 장애와 관련한 올바른 표현

### 표현 1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장애인’ 이 맞는 표현입니다.

장애자의 ‘자’ 는 한자로 者(놈 자)를 사용하며

이러한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인식과 함께 변화하였습니다.

### 표현 2 ‘장애우’ 는 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와 친구(友:벗 우)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강제하면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평등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 표현 3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비장애인’

‘장애인’ 에 대비되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표현은 ‘비장애인’ 입니다.

‘정상인’, ‘일반인’ 이라는 말에는 장애인은 ‘비정상’, ‘특별한’ 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장애가 있다/없다’ 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비장애인’ 이 맞는 표현입니다.

장애인에 대비되는 표현을 어떤 말로 사용할지는 그 사회의 인권수준을 반영한 약속입니다.

## 표현 4 잘못된 표현 ⇨ 올바른 표현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꿀 먹은 병어리	적절하게 의사표현을 못 하게 되는 경우
눈먼 돈	관리 안 되는 돈
병어리 냉가슴 앓다	말도 못 하고 혼자서 가슴만 답답하다
병어리 장갑	손모아 장갑, 엄지손 장갑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
외눈박이 방송	편파 방송
절름발이 정책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
눈깔이 멀었냐?	똑바로 보라, 제대로 판단해라, 그것도 못 보냐?
병신 육갑을 한다.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마라, 상황판단을 잘해라
지랄한다 (뇌전증을 비하하는 용어)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가볍게 굴지 마라, 생떼 쓰지 말라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불구가 되다	장애를 갖게 되다
눈 뜬 장님	보고도 판단을 못 하는
장님 코끼리 뒷다리만 지기	전체를 모르면서 하는 어리석은 판단

### ■ 장애인 VS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면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이세요?” 혹은 “장애인 000씨” 라고 부를 경우,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그냥 “000씨” 라고 이름을 부르거나, 장애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가 있으신가요?” 라고 정중하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유형

### 차별유형

### 직접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법원, "장애인콜택시 단독 탑승 거부는 차별행위  
... 손해배상 해야"

-경향신문 2025.04.30.

키즈카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출입 거부 "차별"

-에이블뉴스 2025.04.07.



### 차별유형

### 간접차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

법원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받게 해달라"  
입시조치 인용

-연합뉴스 2025.05.30.

온라인쇼핑몰 이용 어려운 시각장애인  
... 2심 법원도 "차별 맞다"

-MBN 2023.06.09.



※ 2025년 9월부터는 '괴롭힘 등'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적용됩니다.  
 (괴롭힘 등 :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차별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인권위 "청각장애인 면접 시험에서  
 편의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

-이데일리 2024.11.18.

인권위 "승강기 공사 중  
 대체수단 제공 안 한 것은 장애인차별"

-MBC 2021.11.02.



**차별유형**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 또는 광고효과가 있는 내용안에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부정적 표현 등)를 나타내는 것



영화 'F20' 방영 보류  
 ... 조현병 혐오 조장 논란

-연합뉴스 2021.10.27.

"수어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광고는 차별" 인권위 진정

-MBC 2020.04.23.

## 장애인학대란?

### ■ 신체적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무원 집행유예  
- YTN 2024.03.19.

"정강이 차고 뺨 때려" 발달장애인 상습폭행 의혹  
... 지원센터 직원 입건  
- 서울신문 2025.08.20.



### ■ 정서적학대

언어적 · 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

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고함 지른 복지센터장 벌금형  
- 뉴시스 2025.10.09.

여럿 앞서 장애인 놀람... 대법 "의도 없어도 정서학대"  
- 뉴시스 2021.04.27.



### ■ 성적학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 80대 '법정구속'  
- MBN 2024.04.30.

지적장애 청소년에 "아빠 해줄게"...  
그루밍 성착취범 7년형 선고  
- MBN 2023.02.13.



## ■ 경제적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 임금 착취한  
식당 사장... 징역 4년

-MBC 2024.12.01.

지적장애인 명의로 수백만원 물건 산 30대 여성  
... 징역 4개월

-뉴스1 2025.01.19.



## ■ 유기 · 방임

보호 ·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한겨울에 난방 없이...  
중증장애 동생 방치한 70대 재판행

-경향신문 2024.01.22.

중증장애인 아들 창고에 가둬 방임한  
60대 부모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4.01.19.



## 일상 속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 사례

### 수영을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은지양은 수영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집 앞에 시립 문화체육센터가 있어 문의해 봤는데,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대상 수영 프로그램은 있지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강좌개설도 힘들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은지 양은  
그 곳에서 수영을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 생각해봅시다

은지양은 지금 장애를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 당한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면 안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장애인의 성별·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은지양이 이용하고자 하는 곳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용가능한 문화체육센터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환옥 씨,  
이번에 새로 이사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는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습니다.  
인도없는 차길을 한참 돌아 후문으로 가야만 아파트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항상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불안한 환옥씨.

결국 정문에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한 사람을 위해 많은 돈이 든다며  
반대하였습니다.  
불편하면 이사를 가라고도 말합니다.



생각해봅시다

환옥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접근권 보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사를 강요하거나 이사 오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계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기석 씨,  
 저상버스에 탑승하려 하였는데, 버스기사가 작동법을 모른다며  
 “아! 다음 버스 타!” 라고 말했습니다  
 저상버스는 운행 대수가 많지 않아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에 경사로를 내려달라  
 고 요청하여  
 결국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는  
 귀찮게 한다면 욕설을 내뱉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기석씨는 ‘욕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버스기사는 “조용히 해 이XX야!” 라고  
 다시 한번 욕을 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기석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 된 저상버스에서 말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이며, 욕설과 모욕 등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차별과 학대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인 일상의 행동이나 생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게 되는데요,  
 혹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진규 씨는 아버지 지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규 씨는 설거지, 청소, 식재료 다듬기, 홀서빙 등 아침부터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식사가 잘못 나가거나 실수로 그릇을 깨뜨리거나 하면,  
 사장은 심한 욕설과 함께 때리고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정작 진규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급여를 받아 본 적 없는데 말입니다.  
 사장은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집도 사주고 장가도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진규 씨는 사장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버지가 계속 다니라고 하고,  
 사장한테는 또 맞을 것 같아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생각해봅시다

진규씨는 신체적학대와 경제적착취(노동력착취), 그리고 사장이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과 심한 욕설을 듣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중복학대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진규씨는 누군가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의 특성은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하거나 학대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 하여, 타인의 신고로 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과 이상 행동을 하거나 학대피해가 의심이 되는 장애인을 보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병원 입원하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전화가 사무실에 걸려왔습니다.  
 지적장애인 기환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신병원 입원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또 다시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기환씨를 돌봐야 할지 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신병원 입원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안전한 병원에서...



### 생각해봅시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분명 다른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의 행동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분노나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주세요.  
 주민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상의한다면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리 아이는 왜 현장학습을 못가죠?

뇌병변장애가 있는 보람 양은 중학교 3년 내내 현장학습날만 되면 항상 시무룩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학교측에서 '보람 양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외부활동 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대체수업을 하는 것이 어떨겠냐'고 권유하였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가는 현장학습, 혼자 빠져야 하는 보람 양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학교측의 생각과 권유는 정당한 것일까요?



### 생각해봅시다

보람 양은 지금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의해 수업 참여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현장학습에 참여는 하되 보호자에게 꼭 동행을 요청하거나, 사고발생 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만을 사고예방이라는 이유로, 보호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빼앗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선경 씨는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선경 씨의 사정을 알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집에 자주 방문하여  
사랑한다면서 추행을 하였고 성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경씨는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아저씨의 협박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성폭력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꼭 참고 지냈습니다.

항상 밝고 잘 웃던 선경씨의 행동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 이웃은  
“요즘 표정이 많이 좋지 않네? 무슨일 있어?” 라고 물었고,  
이에 모든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가해자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 생각해봅시다

성적학대는 신체적학대와 더불어 협박, 위협 등 정서적학대가 함께 일어나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적학대 피해자는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 하여, 빠른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작스러운 행동의 변화에 대한 의심!!  
가족 또는 주변 이웃이 받고 있을 고통이 묻히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발달장애인이 성폭력피해에 취약한 이유

1.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어려우며, 행위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장애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해 양가감정(반대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을 갖거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 성폭력에 대한 오해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항하면 더 큰 폭력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기도 하며 가해자의 얼굴이 무서워서, 때릴 것 같아서, 가족에게 말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관계를 '동의' 한 것은 아닙니다.

##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 ■ 주요 관련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a href="https://ggnaapd.or.kr">https://ggnaapd.or.kr</a>
경기북부경찰청	112, 182	<a href="https://www.ggbpolice.go.kr">https://www.ggbpolice.go.kr</a>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9, 031-849-2826	<a href="https://119.gg.go.kr/north">https://119.gg.go.kr/north</a>
보건복지상담센터(복지콜)	129	<a href="http://www.129.go.kr">http://www.129.go.kr</a>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a href="https://www.klac.or.kr">https://www.klac.or.kr</a>
국가인권위원회	1331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https://www.humanrights.go.kr</a>
질병관리청	1339	<a href="http://www.kdca.go.kr">http://www.kdca.go.kr</a>
고용노동부	1350	<a href="http://www.moel.go.kr">http://www.moel.go.kr</a>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1366, 031-873-1366	<a href="http://ggbb1366.or.kr">http://ggbb1366.or.kr</a>
청소년긴급전화	1388	<a href="https://www.1388.go.kr">https://www.1388.go.kr</a>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a href="https://labor.gg.go.kr/">https://labor.gg.go.kr/</a>

### ■ 법령 및 생활정보 · 민원

정부24	1588-2188, 02-721-0600	<a href="https://plus.gov.kr">https://plus.gov.kr</a>
대한민국법원	02-3480-1000	<a href="https://www.scourt.go.kr">https://www.scourt.go.kr</a>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551-3060	<a href="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02-460-2812	<a href="https://www.easylaw.go.kr">https://www.easylaw.go.kr</a>
복지로	1566-0313	<a href="https://www.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a>

###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관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52-1202	<a href="http://www.ggfamily.or.kr">http://www.ggfamily.or.kr</a>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556-0660	<a href="http://www.gurifamily.or.kr">http://www.gurifamily.or.kr</a>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552-0653	<a href="https://nyjfamily.or.kr">https://nyjfamily.or.kr</a>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33-5533	<a href="http://ycfamily.or.kr">http://ycfamily.or.kr</a>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48-8980	<a href="http://www.ujbfamily.co.kr">http://www.ujbfamily.co.kr</a>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945-8050	<a href="http://pjfamily.co.kr">http://pjfamily.co.kr</a>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544-9195	<a href="http://pcffamily.kr">http://pcffamily.kr</a>

###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관련 (보조기기)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031-852-7363	<a href="http://atrac.or.kr">http://atrac.or.kr</a>
-------------	--------------	---

##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관련 (장애인복지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031-856-5300	<a href="https://www.gbw.or.kr">https://www.gbw.or.kr</a>
가평군장애인복지관	031-581-9785	<a href="http://www.gapyeongjb.or.kr">http://www.gapyeongjb.or.kr</a>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a href="http://goyangrehab.or.kr">http://goyangrehab.or.kr</a>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562-0068	<a href="http://guriwel.or.kr">http://guriwel.or.kr</a>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031-592-7150	<a href="http://nyjwel.or.kr">http://nyjwel.or.kr</a>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031-574-2668	<a href="http://www.nyjbr.com">http://www.nyjbr.com</a>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867-0080	<a href="http://www.ddcjb06.net">http://www.ddcjb06.net</a>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8-4090	<a href="http://www.yjwel.or.kr">http://www.yjwel.or.kr</a>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	031-570-2600	<a href="https://danurim.kr">https://danurim.kr</a>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850-5300	<a href="https://www.warmhand.or.kr">https://www.warmhand.or.kr</a>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59-7020	<a href="https://www.pajurehab.or.kr">https://www.pajurehab.or.kr</a>

##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관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11-8080	<a href="https://www.gycil.or.kr">https://www.gycil.or.kr</a>
구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555-5712	<a href="http://www.guricil.kr">http://www.guricil.kr</a>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7530-4407	<a href="https://ndscil.or.kr">https://ndscil.or.kr</a>
동두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31-862-0420	<a href="http://www.ddcil.or.kr">http://www.ddcil.or.kr</a>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847-3431	<a href="https://cafe.naver.com/dddcil">https://cafe.naver.com/dddcil</a>
사람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8803-8448	<a href="http://cafe.daum.net/personinil">http://cafe.daum.net/personinil</a>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08-7712	<a href="http://aramcil.com/new">http://aramcil.com/new</a>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841-6121	<a href="https://yjcil.or.kr">https://yjcil.or.kr</a>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832-9711	<a href="http://cafe.daum.net/ycilcenter">http://cafe.daum.net/ycilcenter</a>
일산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27-9945	<a href="http://www.ilsanlove.net">http://www.ilsanlove.net</a>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06-3095	<a href="http://www.ggableforum.or.kr">http://www.ggableforum.or.kr</a>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031-853-0037	<a href="https://www.facebook.com/seumil">https://www.facebook.com/seumil</a>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841-7397	<a href="http://ujbcil.org/">http://ujbcil.org/</a>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그루터기)	031-853-7747	<a href="https://www.의정부장애인그루터기.com">https://www.의정부장애인그루터기.com</a>
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14-0423	<a href="http://www.funilct.or.kr">http://www.funilct.or.kr</a>
파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53-3763	<a href="http://www.pajucl.kr">http://www.pajucl.kr</a>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45-1305	<a href="https://pajufreewaycilcenter.co.kr">https://pajufreewaycilcenter.co.kr</a>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42-4087	<a href="http://sunflower.or.kr">http://sunflower.or.kr</a>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531-2023	<a href="https://cafe.daum.net/pcnanumIL">https://cafe.daum.net/pcnanumIL</a>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531-6368	<a href="http://www.pocheoncil.net/">http://www.pocheoncil.net/</a>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18-7377	<a href="http://www.hbcil.co.kr">http://www.hbcil.co.kr</a>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 ■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대응 전문기관이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신고를 받고, 피해장애인을 위한 회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 장애인 차별 상담과 현장조사 · 피해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합니다.

###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 장애인학대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할 때

- 쉼터 등 안전한 장소로 입소 지원
- 치료나 즉각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 ○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할 때

- 미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 피해장애인에게 긴급생계비 및 주거 지원 등이 필요할 때
- 피해장애인에게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이 필요할 때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

#### ○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진행 시 조력 지원이 필요할 때

- 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나 고발 절차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등 다양한 법률지원

-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 장애인을 만났는데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나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1644-8295**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차별없는 우리동네 (경기도민 편)

발행처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발행일    2025.12.  
편집제작    젊은기획



11485)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경기도북부장래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6호  
전화 031-851-1007 / 팩스 031-851-1008 / 메일 ggndrc@gmail.com / 누리집 www.ggnaapd.or.kr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번없이 **1644-8295**로 전화하시면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자동연결 됩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yeonggibukb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